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28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18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2. 18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2. 21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대금을 79%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예산의 부족으로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워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상수도사용료 요율 조정(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 2)
- 톤당요금 452.6원에서 542.2원으로 19.8% 인상 조정
-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 진술기회 부여(안 제42조의 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79%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의 매년 적자 누증과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워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,
- 현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톤당 452.6원에서 542.2원으로 19.8% 인상조정 (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 2)과
-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명시(안 제42조의 2)하므로써 상수도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코져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정수대금을 79% 인상하는데 상수도 요금은 19.8% 인상하여도 상수도 적자가 해소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
- 답 : 상수도 사업은 공익으로 주민편익을 위해 적자는 해소키 어려운 실정이며, 본 인상안을 '99. 1.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임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